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시정요구

[제 목] 협회 경영공시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골프협회 규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약」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3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약」 제56조(경영공시)에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경기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감사기간 내(****. *. *. ~ **) 확인해본 결과 홈페이지(www.kgdagolf.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약」 제46조에 따른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동 「규약」 제56조의 공시항목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결과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골프협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규약」 제56조 (경영공시)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골프협회장은

가. 협회 「규약」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에 따라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조속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나. 또한 협회 「규약」 제56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 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개선·권고요구

[제 목]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골프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골프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약」 제49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회계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45조(보칙)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년~****년 각종 보조금 및 자체예산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1. 회계절차 및 관리 미흡 관련

본회 「회계 규정」 제12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매회계연도의 일체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4조(예산편성 지침) 제3항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기능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협회는 예산 및 결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계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별로 구분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의 보고 및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을 하였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으로는 세입재원의 명확한 세출 내역 확인 어려움 등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확인이 곤란하다.

또한 같은 규정 제28조(지출원인행위) 및 제32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 부에 이를 기재하여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상태에서 지출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자체비(각종 후원금), 각종 보조금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의 제반 증빙서류 없이 회계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관련

본회 「회계 규정」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위임전결내규」 없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담당 직원과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골프협회는 회계절차 및 관리의 미흡에 대해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하겠으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의 현실적(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골프협회장은

가. 협회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 및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입·세출 예산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회계관리시스템(전산) 도입 또는 수기회계장부(엑셀프로그램 등)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업무(수입·지출)에 있어서 협회 내부 결재시스템 (기안자-결재자)구축·실행과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나.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내규」를 정립하고,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요구

[제 목]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골프협회 규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운영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1항에는 협회는 협회 및 시군 회원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협회는 감사기간 내(****. *. *. ~ **) 확인해본 결과 「규약」 제37조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제 규정이 ‘미구성’ 및 ‘미제정’ 되어 있다. 또한 제38조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제 규정은 ‘미제정’ 되어 있다.

협회의 위원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기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제 규정	비 고
스포츠공정위원회	*명	없음	
경기운영위원회	미 구성	없음	
경기력향상위원회	미 구성	없음	
인사위원회	미 구성	없음	

※ 경기도골프협회 제출 자료 재구성

협회는 「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제37조(각종 위원회 규정)에 포함시켜 부적합하게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각종 장학제도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등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미구성 되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골프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 협회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규정 및 제 규정에 대한 미흡한 점도 신속히 제·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골프협회장은

가. 「규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신속히 『제정』하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나.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